

# 미국 계란 연구 및 소비자 정보법 (1)

(1974年 10月 1日 美公法 第93—428號)

- ★…… 「鶏卵 研究 및 消費者 情報法(Egg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은……★
- ★……全美國 養鶏業者들로부터 養鶏業 발전에 사용될 基金확보를 위한 會費징수를 내용으로……★
- ★……로 하며 작년 가을 議會를 통과하여 農務省에 移送된 후 이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5個……★
- ★……洲에서 公聽會를 개최한 결과 모두 이 법에 찬성을 하였다. 병아리 부화률 목적으로……★
- ★……하여 계란을 生産하는 業者를 제한 300首 이상의 산란계를 保有하고 있는 養鶏業者……★
- ★……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會費는 계란 30다스당 최고 5센트이며 만약 이 법을……★
- ★……위반시 최고 100 \$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징수될 基金總額……★
- ★……은 약 1,000만 \$로 예상되며 주로 계란의 수요증대, 생산증대, 광고, 판매촉진 및 消……★
- ★……費者教育등에 사용된다고 하며 미국의 全養鶏業者들이 참여한 가운데 贊反投票를 實……★
- ★……施하여 참가자 2/3의 찬성이나 단순과반수를 얻되 찬성투표자의 계란생산량이 전체생……★
- ★……산량의 2/3를 넘을 때 이 법은 즉시 效力을 發生하게 된다. 우리도 이러한 계란연구……★
- ★……및 소비자 보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유통관계의 원활과 소비자 안정의 기틀을 마……★
- ★……련해야겠다는 의도에서 미사료곡물협회의 제공으로 모두 21條로 되어있는 본법을 3회……★
- ★……에 걸쳐 번역소개한다. <편집자주> ……………★

目的: 鶏卵, 鶏卵産物, 老鶏 및 老鶏産物の 市場을 改善하고 維持하며 發展시키기 위하여 鶏卵生産者로 하여금 研究, 生産者와 消費者 教育 및 增進의 調整된 計劃을 確立하고 財政의 뒷받침을 하며 遂行토록 하기 爲한 것이다.

이 법은 美國 議會의 上院과 下院에서 通過되었다.

第1條 (名稱) 이 법은 “鶏卵 研究 및 消費者 情報法”이라고 한다.

第2條 (立法上 評決과 政策의 供述) 계란은 음식물 중에 基本的인 天然食品의 一種이다. 계란은 미국 全域에 散在해 있는 수많은 각 鶏卵生産者들에 의해 생산된다. 鶏卵産物, 老鶏 및 老鶏産物은 鶏卵生産 過程에서 派生되는 生産物이다. 이 生産物들은 洲間 및 國外의 交易를 통하여 移動되며 그런 交易經路로

移動되지 못하는 것들은 이 生産물의 洲間的 流通에 직접 接하거나 影響을 주게 된다. 현재 運營되고 있는 市場의 維持와 擴張, 그리고 改善중이거나 새로 設立될 市場과 其他 利用物의 開發은 國家의 一般經濟뿐 아니라 계란생산자와 계란의 마케팅, 利用 및 加工 등에 관계하는 모든 業者의 福利에 매우 緊要하다. 수많은 계란생산자들이 個別的으로 이 生産物들을 生産하고 마케팅을 하였으므로, 계란, 계란産物, 老鶏 및 老鶏産物의 市場維持와 發展에, 必要한 研究 및 增進의 適切하고 調定된 計劃을 遂行하며 發展시키는데 沮害原因이었다. 그런 計劃을 準備하고 財政의 뒷받침을 함에 있어 協同의이며 集團의인 行動을 保證할 만한 效率의이고 調定된 方法 없이는 鶏卵生産者가 個別的으로 이 生産物 市場을 維持, 改善하는 데 必要한 研究, 消費者와 生産者 情報 및 增進을 準備, 獲得하고 遂行할 수는 없다.

美國 消費者들에게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新鮮한 鷄卵을 適切하고 安定되게 供給하는 것이 大衆의 關心 속에 있다는 事實은 오래전 부터 認識되어 왔다. 鷄卵, 鷄卵產物, 老鷄 및 老鷄產物의 供給이 適切하고 安定됨을 消費者로 하여금 確信시키려면 國內外 市場의 維持와 새로운 市場 育成이 不可避하다.

그러므로 美國의 鷄卵, 鷄卵產物, 老鷄 및 老鷄產物에 대한 國內의 市場의 維持와 擴張, 그리고 市場에서 養鷄業의 地位를 強化하기 위한 研究, 消費者와 生産者 教育 및 增進의 效率의이며 不斷히 調定된 計劃과 適當한 評價에 의한 發展과 基金 確保를 爲하여 順序的인 節次를 갖춘 設立物을 여기에 附與된 權限의 行事を 通하여 認可하는 것이 必須的이며 大衆의 關心속에 있음이 이 法의 目的이고 議會의 政策이라고 宣言되는 것이다. 이 法에서 어떤 條項도 生産의 調節이나 其他 事項이 市販鷄卵을 生産하는 각 계란생산자의 權限을 制限하는 意味로 解釋되지 않는다.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는 다음 각 號와 같다.

(1) 長官이라 함은 農務長官 또는 지금까지 그를 대신하여 執行 權限을 委任받았거나 今後 委任받을 農務省의 公務員을 말한다.

(2) 者라 함은 個人, 個人들의 모임, 組合, 法人, 協會, 協同組合 및 其他 實體를 말한다.

(3) 市販鷄卵 또는 “鷄卵”이라 함은 本來의 鷄卵 形態로 사람이 消費하거나 鷄卵產物로 加工하기 위해 販賣된 닭이 生産한 알을 말한다.

(4) 成鷄 또는 “產卵鷄”라 함은 主로 市販 鷄卵을 生産하는 20週齡 이상된 암닭을 말한다.

(5) 鷄卵生産者라 함은 市販鷄卵을 生産하

는 產卵鷄를 保有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6) 箱子라 함은 계란 30다스 들이 包裝用 箱子를 말한다.

(7) 種卵이라 함은 初生雛 生産을 目的으로 부화에 使用하는 알을 말한다.

(8) 美國이라 함은 美合衆國內 隣接 48個 洲와 議會直割市(D. C.)를 말한다.

(9) 增進이라 함은 廣告를 포함하여 鷄卵, 鷄卵產物, 老鷄 또는 老鷄產物의 概念과 嗜好性을 增進시키는 行爲를 말한다.

(10) 研究라 함은 鷄卵, 鷄卵產物, 老鷄 또는 老鷄產物의 概念, 嗜好性, 市場性, 生産性 또는 品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諸般 研究形態를 말한다.

(11) 消費者 教育이라 함은 鷄卵, 鷄卵產物, 老鷄 또는 老鷄產物의 概念과 嗜好性을 向上시키기 위한 行爲를 말한다.

(12) 마케팅이라 함은 鷄卵, 鷄卵產物, 老鷄 또는 老鷄產物을 販賣 또는 其他 分配하는 行爲를 말한다.

(13) 商業이라 함은 洲間, 國外 또는 洲內에서의 商業을 말한다.

(14) 鷄卵產物이라 함은 鷄卵으로부터 一部 또는 全體가 生産되는 生産物을 말한다.

(15) 老鷄라 함은 市販鷄卵을 生産했었으나 淘汰하기 위하여 生産을 中止한 암닭을 말한다.

(16) 老鷄產物이라 함은 老鷄로부터 生産되는 市販生産物을 말한다.

(17) 孵化機 運轉者라 함은 產卵用 初生雛

生産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18) 初産鷄라 함은 20週齡 이하의 암닭을 말한다.

(19) 初産鷄商人이라 함은 初産鷄의 販賣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20) 鷄卵取扱者라 함은 다음에 나오는 命令, 規則 및 規定에 明示된 바와 같이, 自己가 生産한 鷄卵을 포함하여 他鷄卵 生産者들로부터 鷄卵을 買入하고 加工하여 市場에 出荷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者 또는 鷄卵을 販賣하는 者를 말한다.

第4條 (鷄卵 研究 및 增進 規則) 宣言된 이 法의 政策을 有效케 하기 위하여 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따라 다음의 사람들에게 施行할 規則을 制定하며 必要時 修正한다.

(1) 孵化業 또는 産卵用 初生雛와 初産鷄의 販賣에 從事하는 者.

(2) 市販鷄卵의 生産에 從事하는 者.

(3) 自己가 生産하는 鷄卵을 포함하여 鷄卵 生産者로부터 鷄卵을 買入하여 그 鷄卵을 加工하고 市場에 出荷하기 위해 준비하는 者 또는 鷄卵을 販賣하는 者.

(4) 老鷄의 購入, 販賣 또는 加工에 從事하는 者.

이 規則은 美國內에서의 모든 生産活動과 市場에 適用된다.

第5條 (告示와 公聽會) 長官은 規則의 制定이 宣言된 이 法의 政策을 有效하게 한다고 判斷되면 正當한 告示를 하고 提案한 規則에 對한 公聽會를 開催한다. 이 法의 第16條에 準하여 認定되는 機構 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해 影響을 받는 利害關係者(長官 포함)가

그 公聽會를 要求하며 規定에 관한 提案을 한다.

第6條 (規則의 平決과 制定) 이 法의 第5條에 規定된 대로 告示를 하고 公聽會를 開催한 後에, 公聽會에 提出한 根據로써 그 規則 및 모든 條件들의 制定이 宣言된 이 法의 政策을 有效케 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規則內에서 發見할 경우 長官은 規則을 制定한다.

第7條 (規則內의 許用 條件) 이 法에 準하여 制定한 規則은 다음의 條件들 중에 하나 또는 그 以上을 포함하며 法 第8條에 規定한 以外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 鷄卵, 鷄卵産物, 老鷄 및 老鷄産物의 利用에 關한 廣告, 販賣促進 및 消費者教育을 위한 適節한 計劃 또는 事業의 設立, 制定, 實施와 執行 그리고 그 目的을 達成키 위해 必要한 基金의 支出에 關하여 規定한다. 但, 그 計劃 또는 事業이 鷄卵, 鷄卵産物, 老鷄 및 老鷄産物에 대한 一般需要의 增大로 指向함을 條件으로 한다. 長官은 特定個人의 商標 또는 商號에 關한 言及이 他業者들의 鷄卵, 鷄卵産物, 老鷄 및 老鷄産物에 대하여 不當한 結果를 招來한다고 判斷하면 特定個人 또는 商號에 關한 言及을 禁한다. 또한 廣告, 消費者教育, 또는 販賣促進 計劃에 있어 鷄卵, 鷄卵産物, 老鷄 또는 老鷄産物을 위하여 不公平하거나 欺瞞的인 行爲 또는 策略을 쓸 수 없으며 競爭 生産物의 品質, 價格, 利用에 關하여도 不公平하거나 欺瞞的인 行爲 또는 策略을 쓸 수 없다.

(2) 鷄卵, 鷄卵産物, 老鷄 및 老鷄産物의 마케팅과 利用을 助長, 擴大, 改善하거나 대 贖足케 만들고 蒐集된 資料를 傳播하며 그 目的을 達成키 위해 必要한 基金의 支出을 위하여, 鷄卵, 鷄卵産物, 老鷄 및 老鷄産物과 販賣, 分配, 마케팅, 利用 또는 生産, 그리고 新製品의 開發에 關한 確立, 研究遂行, 마케팅, 開發計劃 및 研究에 대하여 規定한다.

<다음호 계속>